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2. 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 2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1. 20.

다. 상정일자 :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4. 2. 3)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함.(제명)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입법목적으로 함.(안 제3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마포구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1)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4)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2.4 법률제6655호)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등으로 하고,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제7조에서 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개발행위 허가, 토지 거래 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제14조에서 구청장이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 중 제7조제2항에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원회 위원이 20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제3항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을 제144조제4항” 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적용조문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본 조례개정전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관리과장) : 위원장을 포함 15 - 25명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직책은 있는가?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관리과장) : 부위원장은 없고 간사만 있음.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기능 등이 있는가?
- 답변요지(류훈 도시관리국장) :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보고만 받는 기능이며, 도시계획같은 중요한 사항은 위임을 하지 않을 것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마포구의회 의원수 명시규정이 없는 이유는?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관리과장) : 개정전 도시계획위원회에 마포구의회 의원수는 1명이었음. 분과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예정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분과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영입도 좋으나 구동 실정을 잘 아는 구의원이 분과위원회별로 1명씩 포함되는 것도 민의수렴 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 답변요지(류훈 도시관리국장) : 타구의 사례를 파악한 후 형평성있게 처리하겠음
- 답변요지(도봉주 도시관리과장)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2.3 윤동현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이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성이 있고, 이의신청서 서식중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다. 수정주요골자

- 안 제7조제2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함.
- 별지 제6호서식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함.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4. 2. 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성이 있고, 이의신청서 서식중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수정하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제2항중 “구성한다”는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함.
- 별지 제6호서식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은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분과위원회) ①(생 략)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⑥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①(원안과 같음) ②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⑤ (원안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 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안과 같음) 제144조제4항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면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함.(제명)
- 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입법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마포구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에 대한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

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1)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 4)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3. 개정근거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 제113조 및 제144조 등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112조 및 제134조 등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제18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10.31~11.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4.1.1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 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법 제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14조(의견제출) ①구청장이 법 제14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과태료부과 통지 등) ①영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처분 등)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다른 법률 등의 준용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수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수 신 : 귀하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통지

1. 귀하께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1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예고기간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부과 예고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신청 토지 및 허가내역	소재지				
	지 목		면적(m ²)		
	토지이용 목 적				
	허가일자		토지취득일		
토지이용실태					
위반근거법률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예고사항	예고기간		예고금액		
	산출기초				
비 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수 신 : 귀하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

1. 귀하께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144조제2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마포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신청 토지 및 허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토지이용 목 적			
	허가일자	토지취득일		
토지이용실태				
위반근거법률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처분사항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장소			
	산출기초			
비 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제 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년 월 일 현재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만일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목적부동산의 표시		처분통지서번호	
	통지서수령일		과태료금액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①

주소(거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지방법원장 발 신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반 사 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 태 료 처분사유			
	본 인 의 불복사유			

-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